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05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사유

- 가.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(팀)를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신설하고자 하며,
- 나. 기관(부서)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 함.(안 제17조)
- 나.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.[안 제4절의2(안 제26조의2부터 안 제26조의4까지)]
- 다. 종합건설본부의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정하고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업무를 삭제 함.(안 제38조, 안 제3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(6쪽)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호 중 “119종합방재센터, 교육대 및 소방항공대”를 “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”로 한다.

제3장에 제4절의2(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

제2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3조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(이하 이 절에서 “소방학교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둔다.

제26조의3(업무)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
3. 소방전문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26조의4(하부조직 등) 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,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”을 “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.

10.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

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10년 8월 31일”을 “2013년 8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제17조제4호 및 제3장제4절의2(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)의 개정규정은 소방안전학교의 개교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 소방교육대”를 “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”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소방학교·소방교육대”를 “소방안전학교”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문교사회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p>제17조 (소방안전본부)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119종합방재센터, 교육대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17조 (소방안전본부)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<u>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</p> <p>제26조의2(설치) ① <u>법 제113조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(이하 이 절에서 "소방학교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둔다.</u></p> <p>제26조의3(업무) <u>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p>1. <u>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소방전문기술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그 밖의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26조의4(하부조직 등) <u>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8조 (설치) ①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,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,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, <u>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</u>, <u>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</u>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8조 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9조(업무)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</u></p> <p>11. <u>2014.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</u></p> <p>12. (생략)</p>	<p>제39조(업무) -----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</u> <삭제>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10년 8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13년 8월 31일</u>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</p> <p>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</p> <p>제2조 (설치 등)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학교를 폐지·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 없음”